교회법 law church 제9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9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1. 6. 1.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적법절차의 중요성과 실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합체 적인 개념이해 역시 중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교회 설립은 장년 신자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노회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체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라고 교회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진다.

교회가 신학적, 교리적 분쟁은 그리 흔치 않다. 담임목사를 반대한 일부 교인들이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서 교리 문제로 트집을 잡는 때는 있어도 담임목사의 교리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빈도는 그리 흔하지 않다. 분쟁이 있다면 주로 교회 운영에 대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정리되고 많은 연구 작품들이 나왔다.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국가를 상대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때 적용된 교회법과 국가의 각종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비와 법리적 오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때 종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법원의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교회 분쟁은 곧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교회는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한 무지로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려는 경향성은 더욱 분쟁을 심화시킨다. 그동안 법원은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들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기도 했다. 이런 경향들은 결국 교회의 주류세력들이 교권을 장악할 수단으로 반대파를 축출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적법절차의 중요성과 준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목 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Ⅳ. 결론

〖 요약 〗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외 다수.

Ⅰ. 서론 - 문제 제기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고 반대로 탈퇴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 특정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교단 소속 교회에 가입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 가입된 교인들은 자신들의 전체 뜻을 통해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이는 지교회(개별교회)와 소속 교단 소속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교회와 특정 교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1] 지교회와 소속 교단이 합의되어야만 가입이 결정될 수 있지만, 탈퇴는 계약의 파기이므로 어느 일방의 파기로 소속 관계가 단절된다. 교회 측면에서 볼 때 이를 교단탈퇴라 할 수 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때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의결권자들이 총회(공동의회)로 모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소속하고 있는 특정 교단에서 탈퇴하려고 할 때 역시 법적 교인 지위를 가진 의결권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닌 교인들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그 결정은 반드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 적법한 가운데 결의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교회의 소속 교단탈퇴는 주로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징계로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교단탈퇴로 소속 교단과의 단절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 소속 교단은 교회가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상실케 하여 공동의회 소집권을 박탈하려 한다. 반대로 담임목사는 소속 교단(노회)으로부터 면직 등으로 대표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교회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의 갈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일정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 내부적으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의 의결권자 확정 절차와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와 가입, 정관변경 등에 대한 결의는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어떠한 판례법리에 의해 판단하여 결정 내지 판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 분쟁에 있어서 교단탈퇴와 재산 귀속에 대한 판례법리를 변경했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지는 분열을 인정하면서 그 재산 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2]한 이후 그 법리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굳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3]에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례로 변경했다.

또한 총유 형태의 교회 재산은 교인의 지위를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득한 경우,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 지위가 상실된 자는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 상실을 대전제의 법리로 제시했다.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은 지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의결권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후 후속 조치의 결과에 따라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교인들에게 총유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판례를 남겼다.

하지만 종전교회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회의 소속 교단탈퇴 또는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법리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로 판단하는 이유도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 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므로 정관변경은 민법 사단법인의 정관변경(민법 제42조)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교단탈퇴 정족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래에 민법 제42조 단서 조항에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규정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4]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5]으로 정관변경 규정에 근거하여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42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3,000명의 의결권을 가진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과반수인 151명, 혹은 3분의 2 이상인 201명 찬성으로 정관이 변경되고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것이 일관된 판례법리이다. 이러한 법리에 반한 법원의 유권해석도 있다. 서울 목동 제자교회 분쟁에서 나온 결정에 의하면 **교회 정관에 공동의회 의결사항으로 "정관의 제정과 개정"을 두면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을 두

4) 대법원은 서울 강남교회(예장합동) 공동의회에서 재적 교인 총 3,826명 중에서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다212433 판결)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강남교회 역시 개회정족수(의사정족수)는 없고 출석한 대로 공동의회를 개회하게 되어 있었다. 민법 제42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이는 재적 교인이 총 3,826명 중에서 362명이 출석하여 결의한 정관변경이 적법하다고 했다.

5) 두레교회 정관에 출석한 대로 개최된 공동의회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교단탈퇴 규정으로 하여 교단탈퇴가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심리 불속행기각).

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찬성으로 소속 노회를 결정한 것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에 관하여 가급적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만일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 문언 그대로 상회단체의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하여 의사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에 3인의 교인이 출석하고 그중 2인의 찬성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할 수도 있는바, 과연 그러한 해석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노회 지정에 관한 교인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재적 교인으로 판단된 총 3,074명 중 1,022명이 출석하여 재적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인 2,050명에 이르지 못한 이상 그 결의로써 채권자 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없는 공동의회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2014. 10. 21. 확정).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단 변경 결의에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함께 지교회의 존립 목적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탈퇴의 허부 및 요건에 관하여 위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6]

이러한 판례법리는 지교회 정관에 교단탈퇴나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단 헌법에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는 정족수를 이용하여 민법 제42조 단서 조항을 지교회에 적용하여 교단탈퇴의 적법성을 주장할 때 이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어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례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7]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교단탈퇴는 엄격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교단탈퇴 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

6)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등 참조.

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8]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교단탈퇴는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을 때 종전 소속 교단 중심의 교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법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단탈퇴는 교회 정관상 소속과 운영의 일반적인 원리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단탈퇴를 민법 제42조 제1항의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① 전 의결권자 3분의 이상의 찬성요구 ② 정관에 다른 정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대로 적용하는 원칙이다. 교단탈퇴는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 것으로 엄격한 소집철차와 결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교회는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교인들의 공동소유 개념인 총유개념이다.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그 교인들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 관리·보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권리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교단탈퇴로 인하여 침해 내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단탈퇴는 아무런 법리검토 없이 공동의회를 진행하였을 경우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다.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 확인 의무

교단탈퇴나 정관변경은 제3의 기관에 위임할 수 없으며,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고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실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한 법원판결에서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 동시 교단탈퇴 역시 이러한 법리에 똑같이 적용된다.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이며, 적법한 의결권자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는 그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자주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10] 교인들

---

8)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101272 판결(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682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4. 29.선고 2020다201927 심리 불속행기각 확정.

9)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 불속행기각).

10)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

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의해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하여 가입하거나 탈퇴하므로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그 회원이 자주 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한국기독교의 각 교파의 정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장로교 정체에서는 지교회(개별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세례교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당회에서 입회 결정에 따라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당회는 특정 교인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가입신청을 할 경우, 당회는 세례교인 여부를 확인한 후 교인의 지위를 허락할 것인지를 결의한 후 교인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단탈퇴라는 회의목적을 갖고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인명부를 대조하여 의결권자 여부를 확인하여 표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교인명부와 그 확인 대조없이 투표한 행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 없이 투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의결권자 확인 없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무권자가 참여할 수 있어 의결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교회는 다양한 성격의 교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는 학습교인, 원입교인, 단순 예배에 참석한 교인, 세례교인으로 당회의 교인입회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 등이 있다. 특히 교인으로 입회 등록되었다고 할지라도 6개월간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들은 의결권이 정지된다.

이러한 다양한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공동의회에서 교인명부 대조나 확인 없이 의결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할 경우, 그 적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의 교단탈퇴는 교인 지위와 그 유지, 확인의 의무는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와 같은 결의를 할 때는 엄격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라 결의해야 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단탈퇴는 특정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의(전체 뜻)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3조, 제34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의 주체를 말한다.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 제도를 두고 있다."[11]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적용된다.[12] 따라서 교회 역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11) 소재열 "교회정관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서론 참조.

12)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의회에서 표결 방법이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 제42조 제1항의 정관 변경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 의결정족수가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가 하자이거나 의결권자의 확인대조 없이 결의되었다면 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분쟁 교회의 특징은 교단탈퇴 결의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결의를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무관심하여 나중에 결의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많다.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소절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소집권자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13]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간 전 회의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정관에 특별하게 소집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① 1주간 전에 ②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③ 전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무효 사유가 된다.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대법원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4]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만 공지하고 그 외 교인들에게는 공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모든 회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서울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담임목사 측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을 변경하여 반대 측을 제재하려 했다. 반대 측이 공동의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막은 가운데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노회 소속을 변경했다.

그러나 반대 측인 장로들은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판결 내용은 "공동의회 구성원의 공동의회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침해하여 그 결의방법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15]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1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등 참조.

1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15354 판결, 항소 포기로 2012. 9. 14. 확정.

부산 신평로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 결의를 했다.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한 정족수 문제는 다투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다.

> 참석자들의 본당 입장 및 착석, 투표용지 배부, 투표, 투표함 투입 등의 전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참석자들이 피고 교회의 교인인지, 나아가 의결권이 있는 무흠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당시 공동의회 회의록이나 다른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투표 참석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공동의회 진행 과정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메라의 위치 등의 문제로 인해 위 영상을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참석자가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렵다.[16]

재판부는 "세례교인 및 입교인 명부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그 상황상 의결권 없는 사람의 투표 또는 한 사람에 의한 중복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다른 영리법인 등과는 달리 신앙공동체의 특수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정 교회에서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세례교인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서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와 같이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엄격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교단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그 결의의 효력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이상, 앞서 본 법리와 피고 교회의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는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고,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상 하자 등의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1심 판결은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에는 피고가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를 함에 있어 ① 세례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세례교인이 이 사건 공동의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서명자 명부에 당해 세례교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7]

간혹 재판 실무에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가 하자가 있어 위법결의라고 주장할 때에 "그 결의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선고 2018가합101272 판결(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이 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2심과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682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4. 29.선고2020다201927 심리 불속행기각 확정.

17)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682 판결. 이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다201927 심리 불속행기각 확정.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교회의 교단탈퇴 결의의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송에서 판사의 손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Ⅳ. 결론

교회는 교리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교회조직은 의사결정 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므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교회의 교단탈퇴는 민법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고, 교회의 합병은 민법의 법인에 대한 해산 규정에 유추적용한다. 양자 공히 정관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결의하면 된다. 하지만 정관에 그러한 정수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교단탈퇴)은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민법 제42조), 합병은 해산 규정은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민법 제78조)하여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분쟁들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법원은 교회 분쟁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특별히 교단탈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개입하여 판단한다. 단순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도 판단하지만, 그 정족수의 전제가 되는 의결권자의 교인 지위와 유지, 그리고 교단탈퇴를 결의할 당시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교인명부에 의한 확인 여부는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담임목사의 비위에 대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받으려고 할 때 그 대항력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더불어 교단을 탈퇴하려고 할 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대한 하자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교단탈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이유는 판례법리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종교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라는 판례를 확충하므로 교회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제 교회는 더는 뗏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절차는 모든 교인을 설득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가치영역이 아닌 증거에 의한 법리 영역임을 알고,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과 적법절차가 학습되어 있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 지음, 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

신국판 양장, 1088쪽, 정가 50,000원

〈개정 증보판〉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했다.

문의 : 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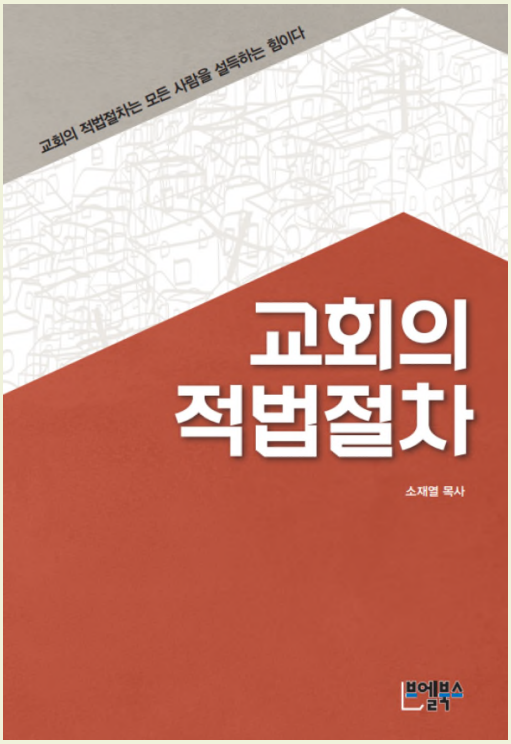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회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총회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2년 동안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 연구를 통해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를 위해 광고로 협찬해 주신 교회와 당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 리폼드뉴스

  기업은행 147-108025-04-016 (예금주: 소재열)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회법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와 필요성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law134@naver.com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침 오피스텔, 1208호)

전화 (031) 984-9134

브엘북스 刊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중에 권징조례 해설집으로 1,200 페이지의 분량으로 교단과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집대성하였다.

권징조례 초판인 1922년판과 1934년판 그리고 2019년 최근래 판 원문 규정을 삽입하였다. 각 조문해설과 장로회 사법 치리에 대한 법리와 사례를 수록하였다.

주문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刊, 신국판 양장본
정가 25,000원
<도서문의 : 070 - 8869- 5944>